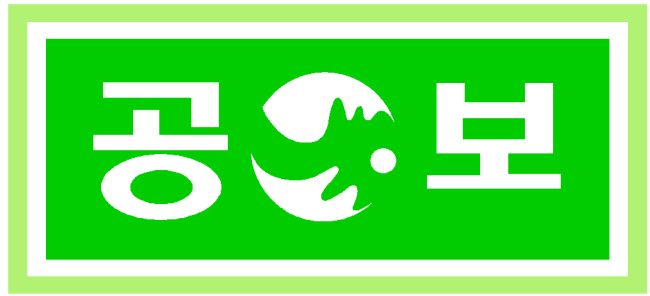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79 호 2017. 8. 10.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44호[하천공사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46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47호[도로명주소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48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910호[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916호[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 144호

하천공사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공사 명칭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침수방지시설 공사(명촌천)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현대자동차(주)
 -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엄포로 70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 하천공사의 목적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침수방지
4. 하천공사의 위치
 - 가. 위치 : 양정동 331-3번지 일원
 - 나. 면적 : 당초 - 일시(676㎡) 영구(533㎡)
 변경 - 일시(757㎡) 영구(584㎡)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 6. ~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자 : 별첨 참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 146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3. 점용 목적 및 개요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명촌동 720번지 일원

나. 면적 : 1,99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2017. 8. 7. ~ 2021.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14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44(명촌동)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8.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68 12L	울산광역시 북구 명송23길 44(명송동)	2017-08-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8-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39(중산동)	2017-08-10	중산지구 동쪽에 위치한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34-2 외 1필지 (중산동1225-5)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9길 4-9(중산동)	2017-08-10	기존 자연마을인 약수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인암동 283-8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8길 12(인암동)	2017-08-10	화동은 화봉의 옛 지명이며 산세가 곱결이 늘어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8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3길 23-8(진장동)	2017-08-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98 6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길 16(진장동)	2017-08-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14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44(명촌동)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_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8. 10.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중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44(명촌동)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6B 12L	2017-08-10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8길 12(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83-8	2017-08-10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9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7. 8.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9명

2. 위원 자격기준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소비자단체의 대표
-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 8. 11.(금) ~ 2017. 8. 21.(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창조경제과 담당자 김혜정(☎ 241-7702)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창조경제과
 - 이메일 : justina1230@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사진포함) *사진은 전자파일로 제출

5. 선정결과 : 2017. 8. 23.(수) 18:00까지 개별통지

6. 선정기준

- 위원회 여성비율 재고를 위하여 여성 신청자 우선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유통업에 관하여 관심이 많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울산광역시 복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 공)	
주 소	울산광역시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신청사유 및 활동계획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복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 : (서명)

이 력 서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직 위	
	직장주소		
	자 택 전화번호 (052)	직 장 전화번호 (052)	
	자택주소 (우편번호) -		
	E-mail	휴 대 폰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		
기 타 참 고 사 항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9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시설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3.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의 상업지역

나. 시설기준(안 제5조)

-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내의 공지내로 한정하며, 영업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옥외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제공
-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다. 타 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

-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8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환경위생과/우 44248
- 전화번호 : 052-241-7782
- 팩스번호 : 052-241-7769

6. 참고사항

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구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의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상업지역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폐기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에 대한 일체의 시설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타 법령과의 관계)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옥외영업 적용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